

감사위원회규정

제정 : 2018. 11. 1.

개정(1) : 2019. 2.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와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

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한다.
- ⑦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위원 중 1 명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

제6조(해임)

위원이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경우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해임된다.

제7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종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부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5) 위원회 결의사항의 통지

(6)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정 및 변경, 해임 (개정1)

(7)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의 재·개정 (개정1)

(8)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9)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0)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11)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12)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3)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4)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15) 경영진단 관련 업무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자본금 또는 자본 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다
음의 행위

(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
공 또는 거래

- (2) 분기 거래 합계액을 기준으로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20% 이상을 출자한 회사 또는 그 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회사를 위하여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 (단, 감사 위원회에 3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포함되고 사외이사 수가 위원의 총수의 3분의2 이상인 경우)

제13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제15조(선정)

- ①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한다. (개정1)
- ② 감사인을 선정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감사인을 연속하는 매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1)

- ③ 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1)
 - 1.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1)
 -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 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1)

제16조(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7조(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8조(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19조(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내부감사부서의 설치)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 지원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전담 지원부서 또는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명을 받아 회사 또는 자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전담 지원부서의 설치·운영, 전문 지원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23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2. 13.부터 시행한다.